

## 수출입 운송 계약서

경기도 평택시 진위산단로 75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이하 “갑”이라 칭함)와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HP빌딩 9층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주)피엔에스네트웍스(이하 “을”이라 칭함)는 2016년 12월 21일 다음과 같은 수출입 화물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 제 1조 목 적

본 계약은 “갑”的 수출입 화물을 “을”이 “갑”과 합의된 조건에 따라 “갑”이 지정한 목적지까지 신속, 정확, 안전하게 운송함과 동시에 당해 화물을 목적지에 위치한 보세창고에서의 보관, 관리 및 고객회사로의 배송과 관련한 업무를 “갑”的 요청에 따라 “을”이 처리하는 것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용어의 정의

- ① 본 계약에서 “운송”이라 함은 “을”이 “갑”이 지정하는 화물 일체를 특정 장소 또는 지역으로 적절한 화물 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갑”과 합의한 시간 내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송, 반송 기타 이에 수반되는 제반 부대 행위를 말한다.
- ② 본 계약에서 “화물”이라 함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장비, 관련 부품 및 부산물, 서류 기타 “갑”이 본 계약에 기하여 “을”에게 운송을 요청하는 일체의 유형적 물품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갑”이 구두로 지정하거나 또는 “갑”的 지정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따른다.
- ③ 본 계약에서 “수출입 업무”라 함은 본 계약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을”이 “갑”을 위해 대행하는 업무 일체와 “갑”이 자신의 화물 수출입을 위하여 “을”에게 요청하는 일체의 제반 업무를 말한다.
- ④ 본 계약에서 “고객사”라 함은 대만에 위치한 United Microelectronics Corporation(UMC)를 말하며, 고객사의 범위는 “갑”的 지정에 따라 확대될 수 있다.

### 제 3조 수출입 업무 및 운송

- ① “을”은 “갑”的 수출입과 관련한 하기와 같은 업무를 대행한다.
  1. 입출항 및 화물 운송 상황 통지 (SHIPMENT & DELIVERY STATUS NOTICE)
  2. 선적 통지 (SHIPPING ADVICE)
  3. 항공, 해상 운송 (AIR, OCEAN TRANSPORTATION) 및 내륙 운송 (INLAND TRANSPORTATION)
  4. 수출입 비용 정산 및 청구와 출금전표 작성 서류 및 자료 보관 (SHIPPING DOCUMENT & NEEDED OTHERS FILING FOR 3YEARS)
  5. 기타 “갑”的 요청에 따른 수출입 관련 제반 업무

- ② “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수출입 항공, 해상 운송 (“갑”의 요청 시 내륙 운송 포함) 및 기타 제반 물류/운송 업무를 수행한다. “을”이 “갑”으로부터 의뢰 받은 사항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운송 및 부대 작업의 이행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위해 “을”은 당해 화물의 내용, 시간, 도착지 등을 구분하여 운송 수단을 준비하여야 하고, “갑”이 지정한 시간과 도착지에 안전하게 도착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을”은 “갑”이 직접 또는 주문 생산한 화물을 “갑”이 요청한 기한 내에 내륙 운송과 항공, 해상 운송 등을 통하여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 최종 업자에게 화물 인도를 수행한다. 이 경우, “을”은 최종 업자로부터 화물을 인도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인도 확인서’, ‘수령증’ 또는 그와 여하한 형태의 증명 서류를 교부 받아 “갑”에게 우편, 전자 메일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 ④ 본 계약에서 “을”的 항공, 해상 운송 지역은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또는 기타의 지역 중 “갑”的 요청에 따라 “을”이 합의한 지역으로 한다. 단, “갑”的 요청이 있을 시 상호 합의된 지역 이외의 지역 운송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하며, 미합의(未合意) 지역 운송에 따른 운송 비용 등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 제 4조 보세창고업체의 지정

- ① “을”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대만 지역(구체적인 지역은 별도 협의) 내에 위치한 보세창고 업체(이하 “창고업체”)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갑”的 화물을 당해 창고에 보관, 관리 및 “고객사”에게 또는 “고객사”로부터 “갑”的 화물을 배송하는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을”은 “창고업체”와 함께 “갑”的 화물이 대만 지역 내에서 보세창고의 입고(실물 입고), 통관 절차, 재고 관리, 보세창고로부터의 출고, “고객사” 사업장 내 “갑”的 임직원에게로의 화물 배송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창고업체”와 사전에 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창고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감독 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갑”的 화물이 손실, 파손, 분실 또는 배송 오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창고업체”에게 특별한 주의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협약을 받아야 한다.
- ③ “을”은 본조 제1항에서 규정한 “창고업체”와의 계약서를 “갑”에게 교부하여 “창고업체”的 의무 사항 등에 대해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 시 “갑”이 요구하는 “창고업체”的 의무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요청하는 “창고업체”的 의무사항으로 인하여 그 비용 등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를 통해 상호 조율하여야 한다.
- ④ “을”은 “창고업체”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창고업체”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며, 만약 “창고업체”的 업무 태만,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그 거래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 “을”은 “갑”的 요청에 따라 “창고업체”를 변경하여 본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 5조 계약의 이해

- ① 운송 경로 선택과 작업 방법은 화물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갑”과 “을”이 협의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한다. 또한 “을”은 위임 받은 화물 일체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화물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조치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송할 책임이 있다. 만약 “갑”이 화물의 특성 또는 품질에 관하여 사전 통지 후 그에 대한 주의를 요청하는 경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的 요청을 수용하여야 하며, 특별한 주의를 기울려야 한다.
- ② “갑”이 별도로 우선 순위를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은 “갑”的 발주 순서에 따라 취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을”은 취급과정에서 “갑”的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요청 사항에 따라 그 취급 순서를 조정하여야 한다.
- ③ “을”은 “갑”的 화물 운송 도중 급박한 상황 또는 화물의 운송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자체 없이 “갑”에게 통보하고 “갑”的 지시에 따라야 한다. 또한 “을”은 “갑”的 사전 서면동의 없이 화물의 목적지를 임의적으로 변경하거나 목적지 도착(운송) 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 ④ “을”은 “갑”的 사전 서면동의를 득한 후 자신의 협력사에게 알선, 위탁, 도급 등의 방법으로 수출입 업무 및 운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을”的 협력사의 행위를 “을”的 행위로 간주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을”은 당해 협력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며, 협력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화물의 파손, 손실, 오선적 및 선적 지연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기로 한다. 만약 “을” 및 그 협력사가 전술한 화물의 파손, 손실 등이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 자신의 귀책이 없음을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갑”에게 입증하여야 한다.
- ⑤ “을”은 “갑”的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의 진행 상황 및 경과 보고를 수시로 제공하거나, “갑”的 요청이 있는 즉시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기상악화로 인한 운송 불가 등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단, 전술한 통지 및 협의가 “을”的 면책을 의미하지는 아니 한다.

## 제 6조 운송비 및 물류비

- ① 운송비는 별첨의 수출입 운송 견적서 또는 상호 합의한 금액에 따른다. 단, 견적서에 없는 지역은 운송 요청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또한 전술한 운송비는 합리적 시장 가격의 범위 내에서 “갑”과의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당해 운송 견적서의 수정, 변경 등은 본 계약의 개신 시점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 ② 수입지의 내륙 운임 및 부대 비용의 원화 환율은 실제 운송 업무가 있는 당일 외환은행에서 고시한 최초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 ③ “을”은 본 계약 기간 동안 운송비 및 제반 물류비의 절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만약 동일한 운송 조건에 대한 “을”的 운송비 또는 물류비용이 제3의 운송업체 비용보다 초과한 경우, “갑”은 “을”에게 해당 운송비 또는 물류비의 인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요청을 수용하여야 한다.

- ④ 본 계약에 따른 운송비 및 제반 물류비와는 별도로, “을”은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된 기간과 일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물류 시황 정보를 제공하고, “갑”이 특정 물류 사안에 대한 리포트를 요구하였을 경우 성실히 이행하는 등 “갑”에게 최선의 물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 ⑤ “을”은 본 계약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창고업체”와의 계약서를 “갑”에게 교부하고, “갑”의 화물에 대한 보관, 관리 및 배송 업무에 따른 계약 대금을 “갑”에게 별도로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은 “을”과 “창고업체” 간의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상호 협의되고 있는 계약대금에 관한 수정, 이의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갑”의 요청이 있는 즉시 “을”은 “창고업체”와의 계약대금을 재협의 하여야 한다.
- ⑥ “갑”은 “을”이 제공하는 “창고업체”의 대금 청구서 및 업무 수행과정에서 “갑”의 사전 동의를 받아 “을” 또는 “창고업체”가 지급한 실비에 대한 영수증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당해 청구서 및 영수증 등을 검토하여 “갑”이 동의하지 않은 비용의 지급 또는 청구 금액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 및 해명을 요청할 수 있고, 당해 관련 사실이 모두 확인된 이후에 청구된 금액을 지급한다.
- ⑦ 본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的 운송비, 물류비 및 “창고업체”에 대한 대금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협의에 따라 그 대금 청구의 방식, 기간 또는 산정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다.

#### 제 7조 대금의 지급

“을”은 “갑”的 수출입 업무, 운송 대행 및 “창고업체”的 계약 대금에 대한 비용을 다음과 같이 청구 정산하기로 한다.

- ① 수출입 항공 운송비, 제반 물류비 및 “창고업체”的 대금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증빙 서류(월합계산서 및 인보이스)를 첨부하여 “갑”에게 청구하기로 한다. 단, 세금 및 통관과 관련한 특별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된 방법으로 청구한다.
  - 1) 계속적 거래 관계에 있는 업체의 경우, 매월 “갑”的 마감 기준일에 청구
  - 2) 일시적 거래 관계에 있는 업체의 경우, 화물의 목적지 도착일(최종 업자로부터 목적물 수령확인서를 교부받은 시점) 기준으로 청구
- ② “갑”은 “을”로부터 청구된 내역, 월합세금계산서 및 증빙 서류를 “갑”이 면밀히 검토하여 오류 또는 過誤(과오) 지급 청구 등이 없는지를 확인한 이후 문제가 없는 경우에 청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을”이 제공한 계좌정보로 현금 결제를 진행한다. 만약 “갑”的 대금 지급 이후 “을”的 지급 청구의 내용 중 과오 지급된 부분이 확인된 경우, “갑”은 차월 비용 지급 시 과오 지급된 금액만큼 상계하거나 기 지급된 과오지급 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③ “을”이 본조에 따른 해당 기일에 운송비 및 물류비의 계산서, “창고업체”의 대금 청구서 또는 증빙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지 못하거나, 또는 “을”的 과실에 의해 잘못된 청구서가 발행되는 경우, “을”은 해당 월의 청구서를 이월하여 다음 청구서 제출 기일에 함께 제출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만약 “을”이 일시적 운송 거래관계에 있는 경우, “갑”은 당해 계산서, 청구서 등의 서류가 최종적으로 도착한 시점으로부터 대금지급 기준을 계산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갑”은 운송비 지급 지연에 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 한다.
- ④ “을”은 “갑”에게 전술한 운송비, 물류비 및 “창고업체” 대금 이외에 어떠한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계약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갑”과 별도의 합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실비에 대하여는 별도 협의 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제 8조 제반 경비의 대불

- ① “을”은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갑”을 위하여 제반 경비를 대신하여 지급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본 계약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며, “을”은 “갑”을 위하여 대신 지급한 내역에 대한 영수증,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② “을”은 “창고업체”가 “갑”的 화물 보관, 관리 및 “고객사” 입출입 배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비 명목의 제반 경비를 “갑”的 사전 동의를 받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실비에 대한 일체의 증빙 서류를 본 계약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창고업체”가 “갑”的 사전 동의 없이 실비를 지급하거나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갑”은 당해 청구 금액에 대한 대금 지급의 의무가 없다.
- ③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제반 경비의 내역을 “갑”이 검수한 결과, 오류 또는 過誤(과오) 지급되는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갑”은 해당 오류 등에 대한 사유를 “을”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을”은 즉시 해당 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을”的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반 경비가 過誤(과오) 지급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갑”은 본 경비에 대한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 제 9조 보험증권의 교부

- ① “을”은 화물 운송을 의뢰 받은 즉시 자기의 비용으로 “갑”을 피보험자로 하여 화물에 손해보험을 담보하고 同(동) 보험증권을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보험의 범위, 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상호 협의 후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 ② “을”은 “창고업체”와의 계약 체결 시 “갑”的 화물에 대한 안전한 보관 및 배송을 위한 보험을 가입할 것을 명시하여야 하고, 동(同) 보험증권의 사본을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보험의 범위, 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갑”的 승인 하에 “을”과 “창고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 10조 손해배상

- ① “을”은 “갑”의 화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성실히 취급하여야 할 책임을 가진다. 또한 “을”은 “창고업체”가 “갑”의 화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창고업체”의 업무 해태,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갑”的 손해에 대하여 “창고업체”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② “을”的 고의 또는 과실로 화물의 파손, 손실, 오선적 및 선적 지연이 발생하여 “갑” 또는 “갑”的 고객사에 피해를 입힌 경우 화물의 INVOICE VALUE(물품의 가액을 의미한다)와 기타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갑”에게 배상하기로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술한 배상을 지체할 경우 “갑”은 별도의 통지 없이 대금 지급 기일에 “을”이 “갑”에게 가지는 운송비 및 물류비 채권과 상계하여 잔여 운송료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다. 만약 “갑”的 손해배상 채권이 “을”的 운송비 채권을 초과하는 경우, “을”은 당해 초과분에 대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사변, 폭동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③ “을”이 “갑”的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 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을”은 제 3자의 피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며, 그로부터 “갑”을 면책시켜야 한다.
- ④ “을”的 계약 의무 불이행에 의한 “갑”的 피해가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로 “갑”이 인정할 때에는 “을”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을”은 “갑”的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대체 수단을 활용하여 “갑”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불가항력 이란, 천재지변, 전쟁, 폭동, 반란, 정부 또는 법원의 명령 및 국제 상거래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을”은 불가항력이 발생한 즉시 “갑”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 11조 계약 기간 및 효력의 연속성

본 계약 기간은 2016년 12월 21일부터 2017년 12월 20일까지로 하며,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양 당사자가 계약의 종료를 서로에게 통보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1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 제 12조 계약의 해지

- ① “갑”과 “을”은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상호 합의한 사항이 준수되지 않았을 경우, 위반 당사자에게 특정한 기일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 요청을 할 수 있고, 만약 당해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정 최고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즉각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2. 어느 일방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거나 끼칠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 또는 예상되는 경우
  3. “갑” 또는 “을”이 파산, 재산 압류, 가압류, 경매, 가처분, 강제 집행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에

#### 해당하는 경우

4. 기타의 사유로 당사자 일방의 계약 해지 통보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 1개월이 경과한 경우
- ③ 그 이외에 어느 일방의 계약 불이행 또는 불성실 이행으로 수출입 업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 해지 1개월 전에 서면 통보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로 한다.
- ④ 본조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본 계약이 해지되는 즉시 양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교부 받은 일체의 비밀정보의 원본, 복사본, 파일 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비밀정보의 반환에 관한 서약서를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 13조 양도 금지 및 성실 의무

- ① “을”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본 조항에 위배한 양도는 효력이 없으며, “을”的 지분에 대한 지배 이익을 양도 또는 이전하는 것은 본 계약상의 목적상 양도라고 간주 된다.
- ② “을”은 수출입 업무와 관련된 “갑”的 자료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을”은 항상 “갑”的 물류 수행에 있어서 물류 수행 합리화 부분에 최선을 다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을 “갑”과 협의 한다.

#### 제 14조 계약의 변경

- ① 계약 기간 중이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② “갑”은 계약 기간 중이라도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을”과 협의하여 운영 방식이나 대금 지급 방식에 대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③ 계약 기간 중 양 당사자의 합의하에 변경된 내용은 본 계약에 우선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 제 15조 비밀 유지

“을”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갑”에 대한 일체의 정보(경영, 기술, 자료, 지식, KNOW-HOW 등)를 계약 기간 중 또는 계약 만료 이후라도 최소 3년간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보증하는 이행각서를 반드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16조 계약의 해석

- ① 본 계약의 각 조항에 대하여 해석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쌍방 협의 하에 결정한다.
-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반 상 관례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7조 관할 법원

본 계약에 관한 당사자간의 소송은 “갑”의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제 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18조 기타

- ① “갑”과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특별히 추가 약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별도 약정할 수 있다.
- ② 본 계약 각 조항 이외의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 상 관례에 따른다.
- ③ 본 계약에 규정된 내용은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서면이나 구두로 합의한 사항을 대체하며, 최종적으로 합의된 내용이다.

양 당사자는 위의 내용과 별첨 부속서류가 본 계약의 일부임을 수락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기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6년 12월 21일

CONFIDENTIAL

(갑)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진위산단로 75 (청호리 332-1)

상 호 :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

대표이사 : 변 정 우 (인)



(을)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HP빌딩 9층

상 호 : 네트웍스

대표이사 : 김 상 현 (인)

